

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자치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박영서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,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축조심사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영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승언)

가. 제안이유

-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
- 이에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됨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

- 안 제3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 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체계상 위치와 설치 시 고려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
 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단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
 - 재난 유형·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7조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재난 정보를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전달하도록

규정함
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현장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8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 활동 종료 후 평가 및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재난이 발생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'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기·최대 피해를 기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음
- 또한, 재난현장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울진산불 피해 주민들은 '22년 8월의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또 다시 고통 받음
- 재난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한 지역별·현장별 적합하고 탄력적인 복구 활동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

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행정안전부에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단체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